



NASA 오픈 소스 계약서

버전 1.3

NASA 오픈 소스 계약서 버전 1.3

본 오픈 소스 계약서("계약서")는 아래에 나열된 정부 기관("정부 기관")으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에 의해 최초로 릴리즈 된 특정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 및 재배포에 대한 권한을 정의한다. 정부 기관으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는 이후에 발생하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나 재배포 행위의, 제 3 자 수익자(INTENDED THIRD-PARTY BENEFICIARY)이다. 이 계약서에 정의된 바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본 계약서에 포함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전적인 수용을 의미한다.

정부 기관: _____

정부 기관 원본 소프트웨어 지정: _____

정부 기관 원본 소프트웨어 제목: _____

사용자 등록 필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_____

원본 소프트웨어 관련 정부 기관 연락처: _____

제1조. 정의

A 항. "기여자"란 원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정부 기관 및 이에 대한 수정본을 만든 모든 주체를 의미한다.

B 항. "적용 특허"란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기여자의 수정본을 단독으로, 혹은 해당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형태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의해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특허 청구항을 의미한다.

C 항. "전시"란 해당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직접, 혹은 이미지나 다른 장치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D 항. "배포"란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단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E 항. "복합저작물"이란 해당 소프트웨어나 그 일부를, 본 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와 별개인 소프트웨어와 조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F 항. "수정본"이란 원본 소프트웨어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내용이나 구조에 대해 추가 및 삭제를 포함한 모든 변형물을 의미하며, 저작권법 17 USC 101 에 정의된 의미의 파생 저작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복합저작물의 일부로 포함하는 행위는 그것 자체로 수정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G 항. "원본 소프트웨어"란 정부 기관에 의해 본 계약서에 따라 최초로 릴리즈 된, _____ 로 정부기관 지정되고 _____라고 명명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서, 소스 코드, 오브젝트 코드 및 동봉된 문서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H 항. "수취인"란 본 계약서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양도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모든 기여자가 포함된다.

I 항. "재배포"란 수정본이 만들어진 이후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J 항. "복제"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본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K 항. "판매"란 해당 소프트웨어를 금전이나 이와 동등한 가치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L 항. "해당 소프트웨어"란 원본 소프트웨어나 수정본, 혹은 그것들의 일부분을 의미한다.

M 항. "사용"이란 해당 소프트웨어를 어떤 목적으로든 응용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A 항. 특허권을 제외한 권리에 의해: 본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의 기여물에 대해,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비독점 라이선스를 수취인에게 부여한다.

1. 사용

2. 배포

3. 복제

4. 수정

5. 재배포

6. 전시

B 항. 특허권에 의해: 본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적용 특허에 의거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의 기여물에 대해,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비독점 라이선스를 수취인에게 부여한다.

1. 사용

2. 배포

3. 복제

4. 판매

5. 판매를 위한 청약

C 항. B 항에서 부여된 권리는 기여자의 수정본과 해당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결합물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기여자가 수정본을 추가하는 시점에 수정본을 추가하는 행위로 인해 결합물이 적용 특허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사항은 수정본을 포함한 그 외의 결합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항. A 항과 B 항에서 부여된 권리는 수취인이 동일한 권리에 대해 서브라이선스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서브라이선스는 본 계약서의 규정 및 조건과 동일해야 한다.

제3조. 수취인의 의무

A 항.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재배포는 제 3 조 H 항의 적용을 받는 추가사항을 제외하면 본 계약서에 의거해야 한다.

1. 수취인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재배포할 때는 항상 본 계약서의 사본을 해당 소프트웨어의 각 복제본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2. 수취인이 소스 코드를 제외한 다른 형태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재배포하는 경우, 수취인은 소스 코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소스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소프트웨어 설명서의 모든 사본에 포함시켜야 한다.

B 항. 각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저작권 표시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 기관이 원본 소프트웨어의 최초 배포에 동봉되는 각 계약서에 적용 가능한 저작권 표시를 삽입하고, 이 괄호 안의 내용은 삭제할 것이다.]

[정부 기관 계약과 생성자로부터 획득된 권한에 따르는 계약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다음의 저작권 표시가 사용될 것이다. 정부 기관이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연도 및 기관 명을 입력할 것이다.]

저작권" {연도} _____에 의해 대표되는 미국 정부. 모든 권리를 보유함.

[소프트웨어가 공무원에 의해서만 작성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저작권 표시를 사용한다. 정부 기관은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연도와 기관 명을 입력한다.] 저작권 " {연도}

_____에 의해 대표되는 미국 정부. 미국 내에서 U.S.Code 17 장에 의한 저작권은 주장되지 않는다. 기타 모든 권리를 보유함.

C 항. 각 기여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변형한 결과를 수정본이라고 간주하고, 이후에 그것을 양도받는 사람이 수정본의 창작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이 수정본의 창작자임을 밝혀야 한다. 이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여자는 동봉된 파일에 변형의

내용과 날짜를 설명하고, 변형을 가한 창작자로서 기여자를 밝혀야 한다. 또한, 예컨대 수정본이 정부 기관에 의해 제공된 원본 소프트웨어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파생되었다는 진술을 파일에 포함시킴으로써 변형을 수정본으로 간주한다는데 동의해야 한다. 일단 동의를 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D 항. 기여자는 자신의 저작권 표시를 해당 소프트웨어에 추가할 수 있다. 저작권 표시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추가된 이후에는 추가한 기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수취인이 제거할 수 없다.

E 항.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나 홍보물 및 광고물, 또는 수취인에 의해 제공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부 기관이나 이전 수취인의 추천이라고 해석될만한 기타 자료, 또는 정부 기관이나 이전 수취인이 본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료에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다.

F 항.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상황을 추적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양도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는 즉시, 웹사이트: _____ 를 방문해 정부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수취인의 이름과 개인 정보는 통계자료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수취인은 수정본을 이용 가능하게 만든 이후에, 위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정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기관에 알려줘야 한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릴리즈와 모니터링을 위한 웹사이트가 릴리즈하는 정부 기관에 의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웹사이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구문]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상황을 추적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는 즉시 제 5 조 F 항에 나열된 연락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_____. 수취인의 이름과 개인 정보는 통계자료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수취인은 수정본을 이용 가능하게 만든 이후에, 제 5 항 F 절에 나열된 연락처를 통해 수정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기관에 알려줘야 한다.

G 항. 각 기여자는 그의 수정본이 기여자의 독창적인 창작이며 기존의 계약이나 규칙이나 법령,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본 계약서에 의해 양도되는 권리를 부여할 충분한 권리가 기여자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H 항. 수취인은 임의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한 명 이상의 수취인에게 보증, 지원, 면책, 또는 책임 의무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정부 기관이나 다른 수취인을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취인 단독으로만 가능하다. 그러한 수취인은 그런 보증, 지원, 면책 및 책임 의무가 수취인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그러한 수취인은 자신이 제공한 보증이나 지원, 면책, 책임 의무 등에 의해 야기된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과 다른 모든 수취인의 면책을 보장한다고 동의해야 한다.

I 항.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 계약서의 규정에 지배되지 않는 별도의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복합저작물을 만들고, 그 복합저작물을 단일한 제품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취인은 복합저작물에 포함된 해당 소프트웨어나 그의 일부가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J 항. 여기에 포함된 어떤 규정과도 관계없이, 수취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재화나 기술정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정부로부터 특정 양식의 수출 라이선스를 받아야 된다는 통지를 받는다. 필요한 수출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 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 기관은 라이선스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요구되는 경우에 라이선스가 발행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없다. 여기에서 부여한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도 그러한 수출 라이선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제4조. 보증과 책임의 부인; 권리의 포기 및 면책.

A 항. 보증 없음: 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소유권, 비 침해, 상품성 여부 및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보증이나 조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각 수취인은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니며, 본 계약서가 부여하는 권한들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오류 및 적용 법률의 준수, 데이터나 프로그램 혹은 장비의 손상 및 손실, 운영 불능 및 중지로 인한 위험 및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명세서에 따른다는 보증, 상품성 여부 및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과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보증, 결함 없음에 대한 보증, 문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 소프트웨어에 따른다는 보증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혹은 법령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본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결과로 만들어진 어떠한 결과물이나 결과물의 디자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기타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기관이나 이전 양도자의 추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 기관은 원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될 수 있는 제 3 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보증과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배포한다.

B 항. 권리의 포기과 면책: 수취인은 미국 정부와 그의 계약자 및 하도급자, 그리고 이전 수취인들을 상대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데 동의한다. 수취인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제품의 손실을 포함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책임이나 요구사항, 손상, 비용 및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취인은 미국 정부와 그의 계약자 및 하도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까지 보호해야 한다. 수취인이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즉각 종료하는 것이다.

제5조. 일반 사항

A 조. 종료: 본 계약서와 그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는, 수취인이 이 규정과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 불이행 사실을 인식한지 30 일 이내에 해결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수취인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배포를 즉각적으로 중지하는데 동의한다. 본 계약서가 그러한 식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위반을 한 수취인이 적절하게 부여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지속된다.

B 조. 분리가능성: 본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무효로 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이러한 사실이 본 계약서의 나머지 조항들의 유효성이나 이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항. 적용 가능한 법률: 본 계약서는 그 유효성과 각 조항의 의미, 그리고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구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의 모든 목적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연방법에 의해서만 구속을 받는다.

D 항. 전적인 이해: 본 계약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릴리즈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전적인 이해와 동의로 구성되며, 그러한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나 수정, 개정이 불가능하다.

E 항: 구속력: 본 계약서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용하고 사용함으로써, 수취인은 본 계약서의 모든 규정과 조건에 구속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규정과 조건에 동의함을 확인한다.

F. 연락처: 모든 수취인은 정부기관과 연락을 취하는데 있어 대표로 지정된 다음의 기관을 통한다: _____